



Q & A

산업자원부 질의/회신

LPG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
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.

개방검사 문의 (모래제거 검사에 대해)



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-12호
(고압가스 안전관리 지준 통합고시)
개정부분중 매물 저장탱크 주위의 모래제거
기준에 관한 질의임.

“매물 설치후 15년 이상 경과한 저장탱크는

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의 외면의
부식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
크 외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” 로 명시돼
있는 부분중 15년차 모래제거 검사후 차기 모
래 제거 검사년도 적용은 모래 제거 검사한 날
부터 15년차인지 아니면 15년차 이후 5년후
개방검사시마다 모래를 제거한 다음 검사를
실시하여야 하는지 (5.21)

A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15-2-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 외면의 부식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크외면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최초 매몰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재 검사시 마다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(5.22)

LPG공급지역제한

Q 알고지내던 후배가 가스판매사업을 한다고 하여 전화해서 갖다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지역제한이 있어서 배달해 줄 수 없다고 함. 여기저기 전화해보니 가스가격도 거의 입을 맞춘듯 1~2백원밖에 차이가 없음. 모든것이 자율경쟁인데 위험물이라고 이럴수 있는지.

이런 법은 지금 당장 없어야 한다고 봄. 조속히 이런규정을 삭제해서 내 마음에 맞는 집, 좀더 친절한집, 좀더 저렴한 집에서 가스를 쓸수있게 해야 할 것임 (5.20)

A 정부는 가스사고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1.11.1부터 “LP가스안전공급계약제”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동 안전공급계약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「액화석유가스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조정명령」을 2002.7.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.

그리고, 조정명령 기간이라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판매업자의 서비스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, 동 계약을 해지하고 거주하고

있는 관할 관청내의 타 가스판매업자와 자유롭게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음 (5.24)

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범위내 건축허가

Q 자동차충전소 허가를 받아 충전소 시설을 하는 중에 완성검사를 필하기 전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거리 범위내에 새로운 건축물(식당)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(5.17)

A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에서 정한 사업소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당시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외 여타 관련법예외의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. (5.23)

충전소의 용기 교체

Q 대구에서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하고있는 대구시 소재 충전소에서 미검용기 교체를 안해주고 있음. 미검용기를 교체해달라고 하니 무슨 계약을 안맺었다고 하면서 교체를 거부하고 있음.

어떻게 하면 좋을지. (5.6)

A 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」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다목(1)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를

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기 재검사 등 용기의 안전관리는 가스공급자가 실시하여야 함.

다만, 가스공급자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제2호다목(2)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, 용기의 안전관리를 충전소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기위탁계약 조건은 가스공급자와 충전업소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바람. (5.8)

충전소내 세차시설에 관하여

Q 충전소내에 자동세차시설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자동세차시설이 아닌 일반물 세차는 가능한지 여부. 만약 불가하다면 그에대한 사유는? 그리고 자동세차시설이 세차기계 기종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기계세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(4.29)

A LPG충전소내 자동세차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제1호 나목(6)의 (라)의④에서 규정한 시설만 가능하며, 이는 동 충전소 내에 충전을 위한 차량이외의 차량의 출입 및 충전을 위한 작업자 이외의 자(세차를 위한 자 등)의 충전사업소내의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이 충전사업소 내 주·정차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동 사업소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세차시설만 허용한 것이며, 동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세차시설은 특정 기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이 아닌 기계설비에 의해 세차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.(5.6).

LPG충전소의 인허가준공 문제(긴급)

Q LPG충전소허가를 받아 준공단계에 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받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. 이유는 기술검토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현황측량성과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나 시설부지의 토지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.

관련규정도 없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민원인이 제출한 도면등을 가지고 담당자가 확인하여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닌지.

아무튼 현황측량 성과도가 LPG충전소의 인허가 준공에 필요한 구비서류이며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여 주시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? (4.25)

A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(1)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항은 사고발생시 생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고 준공시의 완성검사에 따른 기술검토시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도 함.

그러기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실측만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경계측량성과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확인하여 검사처리하도록 하고 있음.

다만, 다른 방법으로 충전사업소경계 및 안전거리 유지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

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(5.1)

LPG 충전소 보호시설 해당여부

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LPG충전소를 설치하려 하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별표3(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) 1.-가.- (1)-(라)항에 의하면 저장설비는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음.

하지만 50m 안전거리 내에 부지면적 10,000㎡ 이상 6층 건물이 착공 상태에 있을때 자동차용 LPG충전소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(4.17)

A LPG충전소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(1)(라)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(탱크로리 이입·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)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므로, 지상6층 건물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, LPG충전소는 동 건축물로부터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(4.23)

LPG충전소 부지내 세차장 및 수리점 설치가능 여부

Q LPG충전소 부지내 바닥면적 100㎡ 미만인 세차장 시설 및 수리점

(LPG 차량무상서비스)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(4.10)

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 (6)의(라)에 의거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은 사업소부지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, 동 조항에 규정된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리점(LPG차량무상서비스 시설)은 충전소사업소 부지내에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 (4.13)

LPG용기 위탁관리

Q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 45조 별표 17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용기위탁관리에 대해 질의함

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에 용기관리위탁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사업자가 스스로 용기 겉표면에 상호 표시시 충전사업자명을 표기하였을 경우 쌍방간에 용기위탁관리계약이 된 것으로 유추해석 가능한지 여부

또한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 용기관리위탁 계약 체결시 용기재검사 및 폐용기 교체는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, 용기 겉표면 상호표시는 판매 사업자 부담으로 계약 체결시 충전사업자명 표기 여부 (3.11)

A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용기위탁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용기에 충전사업자의 상호를 표기할 수 있으며, 용기위탁계약의 조건은 판매사업자와 충전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(3.16)